해외유학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유학자]

매년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유학을 준비합니다.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또한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지나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잘~~한 번 준비해 보자구요~~.

해외유학자 1
1.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4
1.1.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4
1.1.1. 국비유학 4
1.1.2. 자비유학 6
1.1.3. 정보 수집하기 8
2. 유학 준비하기 10
2.1. 여권 및 비자 준비 10
2.1.1. 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10
2.2.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11
2.2.1.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 대상자 11
2.2.2.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 13
2.3. 유학원 이용 15
2.3.1. 유학원 이용하기 15
2.4.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17
2.4.1. 유학자금 송금 준비하기 17
2.5.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18
2.5.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18
2.6.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22
2.6.1.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22
3. 유학생활 25
3.1.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25
3.1.1. 유사시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업무 알아두기 25
3.2. 재외국민등록 27
3.2.1.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27
3.3. 국외부재자 투표 29
3.3.1.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29
3.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32
3.4.1. 혼인신고하기 32
3.4.2. 출생신고하기 35
3.5.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37
3.5.1.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37
3.6.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39
3.6.1. 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기 39
4. 귀국 43
4.1. 귀국이사 43
4.1.1. 이사물품 면세받기 43
4.2. 귀국 후 조치 46
4.2.1. 귀국 후 각종 신고하기 46
4.2.2.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47

1.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1.1.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1.1.1. 국비유학

국비유학의 개념

"해외유학"이란 ?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이란 ?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유학생의 선발

▪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함)에 따라 선발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 제외)

응시자격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시험과목

▪ 국비유학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되는데,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다음의 항목을 평가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외국어 시험 성적

- 국사 시험 성적
- 학업 성적
-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다음의 항목을 평가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5항).

-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시험합격의 효력

▪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장학생의 혜택

학비 및 생활비의 지원

▪ 국비유학생에게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취소사유

▪ 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한 경우

-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9월 말까지 유학하려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항 단서).

▪ 그 밖의 사유

-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해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나 연구·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 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 응시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1.1.2. 자비유학

자비유학의 개념

"해외유학"이란 ?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이란 ?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자비유학"이란 ?

▪ “자비유학”이란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자비유학의 자격

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단, 예·체능계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음)

√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단, 해당 입상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음)

√ 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단, 해당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국비 또는 자비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비 또는 자비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해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미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1쪽).

-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자비유학의 특례

▪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이하 “부모 등”이라 함)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등이 귀국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은 자비유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하여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비유학 인정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

·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합니다.

· 다만,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해당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2쪽 >

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신청기관

▪ 자비유학의 인정신청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신청서류

▪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 자비유학인정신청서
- 공통제출서류
  - √ 유학하려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 √ 사진 1매
-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 학교장 추천서 1통
-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해당 입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위의 자비유학 자격요건 중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위의 자비유학 자격요건 중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민원서비스-해외유학인정신청-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비유학인정의 취소

취소사유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위의 자비유학의 자격요건 중 2. 또는 3.에 해당되어 유학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해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유학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 ※ 자비유학 후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귀국 — 귀국 후 조치 —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 정보 수집하기

유학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각 국 대사관을 통한 정보 수집

▪ 본인이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그 국가의 교육제도 및 유학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e-mail 등을 보내 질문을 하면 간단한 답변과 필요한 자료 등을 보내주는 곳도 있으므로 대사관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 ※ 주한공관의 목록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의전-주한공관-주한공관주소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입학에 필요한 서류 및 학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 대학별로 학생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언어능력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학점이라든지, 에세이, 학업계획서 등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미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수집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장학금에 대한 정보 수집

▪ 해외유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제공해 주는 기관도 있고, 각 학교에서도 해외 유학생을 위해 각종 장학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 분	내용
국립국제교육원(한국유학종합시스템)	• 국비유학생 선발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국장학재단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한국고등교육재단	• 해외유학장학생 • 해외유학후보장학생 • 중국유학장학생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 국외장학생지원사업

> ※ 그 밖의 장학금 지원 재단 및 기업에 관한 사항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홈페이지-기타 장학금-재단 및 기업 장학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유학 준비하기

2.1. 여권 및 비자 준비

2.1.1. 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여권의 발급신청

"여권"이란 ?

▪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말하는데, 외국으로 나갈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관

▪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이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신청서류

▪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 여권용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 이상 3.6㎝ 이하인 가로 3.5㎝, 세로 4.5㎝의 사진을 말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 ※ 여권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최초 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절차

▪ 여권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자, 여권, 국적』의 <여권-일반여권-여권 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발급 신청

비자란 ?

▪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VISA) 참조).

비자발급의 필요성과 예외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하려면 그 국가에서 발급한 비자를 원칙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VISA) 참조).

▪ 그러나,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나 제3국 여행 통과객, 국제기구 발급 여권 소지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도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참조).

▪ 유학생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기간(대략 30일 ~ 90일 정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외국에 머물러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후 체류해야 합니다.

※ 각국의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한 안내는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절차,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 준비하기-여권·비자-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2.2.1.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 대상자

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 제외)을 가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전단).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

▪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다음과 같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항).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연수기관은 26세

▪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달리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제14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허가제한 대상자

허가제한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학을 위한 허가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본문).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제외,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① 또는 ②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③ 또는 ④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①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②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③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④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 다음과 같이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②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④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채용 등의 제재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40세까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본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

▹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 되지 않으며, 이미 이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

▪ 다만,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단서).

형벌의 부과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1항).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2항).

>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병역의무자(입영 전)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

허가신청방법

허가신청기관

▪ 유학을 위한 해외체류 허가신청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참조).

신청시기

▪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신청서류

▪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제2항제7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국외학력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 그 밖에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에서 필요한 신청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유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허가의 신청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 유학을 위한 허가신청은 < 병무청 홈페이지 > 에서도 가능합니다.

허가결정

허가서의 교부

▪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에 기재하고 국외여행허가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를 본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허가취소

취소사유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유학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유학을 위해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2.3. 유학원 이용

2.3.1. 유학원 이용하기

유학원 이용 시 유의사항

유학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

- 계약해제 시 환급 거절

  · 김OO씨는 2013. 10. 8. N유학원에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2,052,000원(대행비 1,500,000원 + 비자비 55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 2013. 10. 14.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 계약내용의 이행 지연

  · 윤OO씨는 2013. 4. 2. Y업체에게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300,000원을 지급함. 계약 당시 사업자는 2013. 8월말 경 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9월초 비자를 신청해 2013. 9월 중순경에는 출국이 가능하다고 함. 2013. 8. 13. 추가서류를 제출하였고, 사업자는 학교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이후 회신이 없음.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퇴사하였고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소비자가 제출한 추가서류도 아직 학교에 제출되지 않음. 소비자는 전액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비자발급 안내 미흡

  · 김OO씨는 2011. 6월 자녀의 캐나다 유학수속대행을 K업체에게 의뢰하고 200,000원을 지급함. 이후 대사관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비자서류이므로 밴쿠버 이민관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2011. 6. 20. 자녀와 함께 출국함. 그러나 벤쿠버 공항에서 소지한 서류가 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강제 귀국 당함. 귀국 후 사업자에게 비자신청비, 검진비, 왕복항공권비, 호텔체류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추가대금의 요구

  · 윤OO씨는 E업체와 2011. 10. 31. 헝가리 국립 패치의대 프리메디스쿨 입학 관련 수속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수수료 1,800,000원과 총 9,800,000원의 등록금을 완납함. 그러나 2012. 12월 사업자가 비자신청비 및 항공료로 2,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해 계약해제를 요청함. 사업자는 2013. 4월말 등록금을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6월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1372소비자상담센터-알림뉴스-상담속보-“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참조>

유학원 이용 시 주의사항

※ 유학원 이용 시 확인하세요.

· 유학원 이용 계약의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환불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해외 유학 상품 계약 시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담률이 일반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 유학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학원을 이용하기 전 유학 희망 국가의 생활환경, 문화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알아두세요. 또한 유학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재차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미리 결제하는 일 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양쪽이 사인한 계약서 1부를 받아두세요.

<1372소비자상담센터-알림뉴스-상담속보-“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참조>

유학원 관련 분쟁해결

분쟁해결기관

▪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기준

▪ 유학원을 이용해 유학수속을 대행시킨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제11호. ③유학수속대행업).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의 100% 공제

2.4.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2.4.1. 유학자금 송금 준비하기

은행에 유학생 등록하기

유학경비 지급을 위한 은행 지정

▪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2항 본문).

▪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유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2항 단서).

> ※ **지정은행과의 거래 시 장점**
>
>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화송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래하기 편한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할인, 환율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아요~~
>
> 은행마다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해외에서 은행 계좌 개설**
>
> 한국에서 경비를 송금 받으면 이를 찾을 은행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
> 학교나 거주지 가까이에 있고, 현금인출이 편리한 은행 중 안전성을 위해 가급적 큰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으며, 학교 등에서 연결된 계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설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환거래로 인한 신고의 필요성 유무

외국환거래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 유학생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을 환전해 소지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제2호라목).

▪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신고의 예외

▹ 해외유학생이 해외 체재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위해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와 금전대차계약(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의 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제5호).

▪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

▹ 해외유학생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제1항제9호).

외국환거래에 대해 신고가 되는 경우

▪ 연간 유학경비의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유학생에 대한 송금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내역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제3항).

▹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 달 2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제3항).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 유학생이 미화 1만불 초과하는 금액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출국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2항).

2.5.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2.5.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 (19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8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비엔나 협약국	
아시아 (12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몰디브
미주 (8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쿠바, 페루
유럽 (42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29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베냉,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에티오피아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으로, 해당 국가에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받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제4호 참조).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및 지역은 2026년 8월 기준 총 133개국이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영사협정/사증(비자)-영사협정-운전면허 상호인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대만 및 베트남에서 운전할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 **※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
> ·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참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발급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및 별지 제59호 서식).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 사진 1장

√ 신분증명서(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음)

※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내 기재내용 참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항 및 별지 제90호서식).

▪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함)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 **우리나라 면허 유지를 위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

· 해외체류 등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참조).

·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 적성검사 연기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적성검사/면허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자동차 운전면허 —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2.6.1.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급여정지 신고하기

▪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제74조제1항·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 **급여정지 신고하기**

· 유학으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급여정지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자주묻는 질문 참조 >

▪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부과점수의 제외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정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신청

납부 예외 신청하기

▪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유학으로 국외출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 참조).

※ 납부 예외 신청하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음과 같은 납부 예외 신청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여권사본(출국여부 확인 가능할 것) 등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참조>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나요?

(질문)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국민연금 100문100답 — 가입·탈퇴 참조 >

3. 유학생활

3.1.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3.1.1. 유사시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업무 알아두기

재외공관 알아두기

"재외공관"이란 ?

▪ “재외공관”이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 및 제2조).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체류·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1호).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의를 위한 영사콜센터의 운영

▪ 영사콜센터의 운영

▹ “영사콜센터”란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제공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말합니다(외교부 해외안전여행-안전여행 서비스-영사안전콜센터-콜센터 소개 참조).

▹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교부 해외안전여행-안전여행 서비스-영사안전콜센터 참조).

√ 해외 대형재난 발생 시 가족 등의 안전확인 접수 및 현지 안전정보 안내

√ 해외 사건·사고 접수 및 조력

√ 신속해외송금 지원

√ 해외 긴급 상황 시 통역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지원

√ 여권, 영사확인 등 외교부 관련 민원상담

※ 영사콜센터의 이용방법 및 국가별 접속코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안전여행 서비스-영사안전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체류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위치 및 연락처는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부 소개-재외공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의 조치

적절한 대책의 수립

▪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 면담 및 주재국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1조제3항).

▪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사고 당사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해 관련내용을 알리고,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1조제4항).

도난,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 시 조치

▪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하면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제1항).

▪ 재외공관은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제2항).

강력범죄 발생 시 조치

▪ 재외공관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등의 강력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의 행정적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사건·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현장에 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파견하여 상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3항).

▪ 재외공관은 피해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재국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본부에 보고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5항).

▪ 재외공관은 피해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일정주선 등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6항).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시 조치

▪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통보 받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동 재외국민과 접촉하여 그 신원확인 및 혐의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1항).

▪ 재외공관은 체포·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사법당국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2항).

▪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시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를 포함),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내 가용한 변호사 명단을 확보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3항).

▪ 또한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포·구금된 재외국민과의 면회를 주선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4항).

▪ 재외공관은 통역인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다만, 통역인 제공이 주재국 법령상 법제화되어 있는 공관은 제외함), 통역인 명단이 확보되면 주재국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재국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통역을 필요로 하는 재외국민에게 그 명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6항 및 제7항).

실종신고 접수 시 조치

▪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자가 국내 또는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불명 재외국민의 인적 사항, 연락처,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와 영사협력원 및 한인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제1항).

▪ 재외공관은 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재외국민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고를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제2항).

※ **해외 체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의 행동요령**

·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과 녹취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두면 좋습니다).

·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하세요.

· 장기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안이 위급해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현지 또는 통역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해외안전정보-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교통사고>

※ 그 밖에 해외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과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해외안전정보-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재외국민등록

3.2.1.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이란 ?

▪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기관

▪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기간

▪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재외국민등록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제출서류

▪ 등록을 해야 하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함)은 재외국민등록신청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함)

▪ 등록대상자의 친족 중 ① 배우자 ② 배우자의 직계혈족 ③ 직계혈족 ④ 직계혈족의 배우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등록공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의 등록대상자 본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 관련 서류 확인 및 추가 제출서류

▪ 등록공관의 장은 위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본인정보 공동이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을 통해 등록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본문).

- 여권
- 법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여권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

재외국민등록부에의 기록

▪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6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변경 및 이동신고

변경신고

▪ 신고기간

▹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 변경신고의 방법

▹ 변경신고는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에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참조).

이동신고

▪ 신고기간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해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항).

▪ 이동신고의 방법

▹ 이동신고는 재외국민등록 이동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참조).

3.3. 국외부재자 투표

3.3.1.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국외부재자 투표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 신고기간

▹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신고서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

√ 여권번호

※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5항).

▪ 신고방법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 전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제1항 및 별지 제59호의4서식).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 국외부재자신고가 아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 참조).

※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 및 그 결과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등록신청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 투표장소

투표장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이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투표기간 및 시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투표 시 지참물

▹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등의 국적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투표순서 및 방법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재외선거제도-투표 방법 참조>

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②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합니다.

③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3.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3.4.1. 혼인신고하기

한국 방식에 따른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혼인의 성립

▪ 외국에 있는 한국인도 한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한국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이때의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의 수리에 따라 신분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참조].

신고장소

▪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신고기간

▪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신고서류

▪ 혼인신고서 및 다음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민원서비스-혼인신고 참조].

첨부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

한국 방식에 따른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혼인의 성립

▪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상 혼인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이 외국 법규를 모두 조사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혼인당사자는 본국법에 따라 혼인성립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소명하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참조].

신고장소

▪ 이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에 할 수 없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 혼인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에서 현재지 등록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신고기간

▪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신고서류

▪ 혼인신고서 및 일반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류 이외에 다음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가목 및 별표).

- 혼인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

외국 방식에 따른 증서등본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의 성립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외국의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를 할 수 있고, 거주지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참조].

▪ 혼인이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성립한 경우에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러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인에 관한 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참조].

신고장소

▪ 재외국민이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한국인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신고기간

▪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 증서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서류

▪ 혼인신고서 및 일반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류 이외에 외국방식에 따라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조).

▹ 혼인증서의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나 관공서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신분행위 성립사실을 증명한 서면이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증서의 등본만 인정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그 밖에 혼인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제2편 혼인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2. 출생신고하기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기간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

▪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부 또는 모

▹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 : 모

신고서류

▪ 출생신고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출생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8쪽 참조).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

· 출생증명서 등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부모의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외국 국적의 자진취득 등)하였으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 시민권증서 사본, 귀화허가서 사본 등 대한민국 국적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서면

· 출석한 신고인의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위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그 번역문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 재외국민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자녀의 국적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 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절차

√ 미성년자 :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인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父)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당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복수국적자가 된 때로부터 2년 내

·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 국적취득 및 선택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국적/귀화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3.5.1.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신청대상자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으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이 연장허가 신청의 대상자가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참조).

신청기간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연장이 허가되는 기간

▪ 외국의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이 허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 **학교별 제한 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항 참조)

·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연수기관은 26세

※ 유학, 연수 등 체류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구비서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신청서류의 제출

▪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학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내의 기재내용 참조)

심사

▪ 병무청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허가

▪ 병무청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허가 신청서류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바로 제출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때 본인에게 연장허가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를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제5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의 제재

-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유학을 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94조제1항·제2항).

  · 법적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행정 제재 : 40세까지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 등

※ 이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 유학준비하기 ―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 대상자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3.6.1. 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이란 ?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p. 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각종 공제대상은 <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제50조제1항).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으로서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

√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혼인 중인 사실(사실혼 제외)이 증명되는 배우자]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9항]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용한 교육비만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 및 제3호나목).

※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교육비를 지급한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②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자(「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세액공제금액

▪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인 경우

▹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모두 인정(공제)되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

▪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인 경우

▹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는 예시로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4).

▹ 세액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교육비납입증명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경우 재학증명서로 갈음 가능)

▹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치원 또는 학교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학생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예 : 국외유학인정서 등)

▹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등)

※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질문)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 참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대상자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①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공제한도 : 초·중·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2025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p. 179 참조>

4. 귀국

4.1. 귀국이사

4.1.1. 이사물품 면세받기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거주기간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국한 일자부터 우리나라에 다시 거주하기 위하여 최종 입국한 일자까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입국심사증,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일시귀국에 따라 규정된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된 때에 세관장이 귀국 사유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거주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일시귀국 기간은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제3항).

- “이사자”란 ① 재외영주권자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②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 “단기체류자”란 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②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이나 ③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④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을 말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 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

※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본문).

-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데,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 ~ 2명	5개
3 ~ 4명	6개
5 ~ 8명	7개
9명 이상	8개

※ 세금을 내야 통관이 되는 물품

-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에 대해서는과세됩니다. 이 경우 다음의 1~4와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①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②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③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④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⑤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단서).

▪ 이사물품 반입기간

▹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외국 영주권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일지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도착기간이 경과하고도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1. 또는 2.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업체를 이용한 이사 시 주의사항

※ 해외 이사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복합운송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여러 운송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대략의 화물부피와 견적가를 비교해 결정하되, 턱없이 낮은 견적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운송과정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 국제적인 이사화물 단체(fidi, omni)로부터 서비스 인증(fidi의 faim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 해외 이사업체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

· 포장재, 피아노 등 부피가 큰 화물에 대한 추가비용, 통관비용, 컨테니어 tax, thc, 부두이용료 등 각종 비용의 운임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해요.

· 해외 이사는 여러 단계의 운송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화물 파손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운송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 파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시 파손에 대한 책임 부담 규정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만약 업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화물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보험가입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므로 화물의 구입가격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아요.

< 한국소비자원 ㅡ 소비자뉴스 ㅡ 보도자료 ㅡ “해외이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도입 및 견적과정 개선 필요” >

자동차의 반입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

▪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제1호).

-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동차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자동차의 보유기간 계산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 포함) 자동차 보유기간은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날(임시등록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가목).

▪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자동차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의 자동차 보유기간은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 포함)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나목).

▪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을 적용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자동차의 과세기준

▪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과세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단서).

> ※그 밖에 이사화물 자동차의 예상 세액, 자동차 통관절차, 인정 조건, 면세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개인통관— 해외이사화물 — 자동차 통관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부과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신고자가 수입신고 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관세법」 제241조제5항제2호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4.2. 귀국 후 조치

4.2.1. 귀국 후 각종 신고하기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귀국 후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 ※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현재 귀국해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
> ※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은 < 정부24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운전면허증으로의 갱신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운전하기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④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함)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①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②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③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④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후단).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기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별표 3 참조).

> ※ 외국면허 교환발급에 대해서는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해제신고하기

▪ 유학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를 했다면, 국내 입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으로 입국일자가 확인되어 입국신고 없이도 입국일 다음날부터 급여정지가 해제되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 신고 참조).

▪ 다만, 국내 입국한 대상자가 입국 당일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입국 당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또는 전화상담(☎ 1577-1000)을 통해 입국신고를 하여 급여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 신고 참조).

국민연금의 납부재개 신고하기

▪ 유학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납부 예외 신청을 했다면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ㅡ 연금정보 ㅡ 알기쉬운 국민연금 ㅡ 가입 및 신고 ㅡ 지역가입자 ㅡ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참조).

▪ 납부재개신청은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4.2.2.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출국 시 학적처리

※ **학적처리의 기준**

- 인정유학자 :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고 자비유학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미인정유학자 : 의무교육대상자가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유학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1쪽)

※ 인정유학자 및 미인정유학자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유학을 위한 계획 세우기 ―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자비유학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유학자의 경우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을 하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유학자의 학적 처리는 각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 및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4쪽

  · 초·중학생 :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 고등학생 :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 미인정 유학자는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을 한 것으로 처리되고,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참조).

귀국 후 편입학하기

인정유학자의 경우

▪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가 미실시됩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4쪽).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 학교의 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참조).

▪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에도 해당하여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8조의2제1항제3호).

※ 예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5쪽

- 정원 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생이 재취학을 원하거나 자퇴한 고등학생이 편입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학을 간 후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을 하지 않았거나 수학기간이 6개월(1학기)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도에는 재취학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에서 허용할 수도 있으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도 실시할 수 없음).

※ 해외의 미인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유학한 경우 귀국 후 학적처리방법

(질문)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무교육대상자가 미인정 유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일(日)을 결석처리하고 결석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경과하게 되면 학적을 정원 외로 관리하게 됩니다.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또는 학력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98조의2제1항제3호).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학년을 다시 다녀 재이수를 하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기관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미인정 유학은 아니지만, 미인정 유학처럼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2012년) 50쪽 참조>